
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655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5. 3. 21.
제출자 : 달성군수 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기업법」제5조에 근거하여 2002년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약 20여년간 공영개발사업의 추진 실적이 없었음
- 또한 「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」등 관련 조례를 통하여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에 대한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」를 폐지함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기업법」제5조 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5. 2. 20. ~ 2025. 3. 12.)결과 : 의견 없음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- (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5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6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「지방공기업법」

제5조(지방직영기업의 설치)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·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·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8. 4.]